|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공제율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행위를 규율하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공제한 후 익월 15일까지 그가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관련 정보, 지급한 소득 액수, 공제 항목과 액수, 원천징수한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자료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지칭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원천공제한 세금을 익월 15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를 시행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임금•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소득;  (4) 특허권사용료소득;  (5)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6) 재산임대소득;  (7) 재산양도소득;  (8) 우발소득.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최초로 소득 지급 시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자식별번호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A)>를 작성하여야 하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그에게 제공한 관련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지급 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월별로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누계원천공제법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납세연도 내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납세자가 본 업체에서 당월까지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누계 소득에서 누계 면세소득, 누계 차감비용, 누계 특별공제, 누계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1(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누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 후 누계 감면세액과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당기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 환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납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천징수세액 =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원천공제율 - 속산공제액) - 누계 감면세액 -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누계 소득 - 누계 면세소득 - 누계 차감비용 - 누계 특별공제 - 누계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  그중에서 : 누계 차감비용은 5,000위안/월에 당월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당년도에 본업체에서 임직한 월수 또는 본 업체에 의해 고용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거주민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특별부가공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월별로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특별부가공제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지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횟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차감비용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매회 수입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위안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매회 수입이 4,000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의 20%를 비용으로 차감한다.  과세소득액 :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다. 노무보수소득은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2(첨부 참고)를 적용받으며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20%의 원천공제세율을 적용받는다.  거주민 개인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행 시 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로소득의 소득액을 연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 지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횟수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은 매월의 수입에서 5,000위안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세율표 3(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소득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 불가하고, 거주민 개인의 요건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초정보 변화 상황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도 종료 후 거주민 개인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또는 우발소득 지급 시 법에 의거하여 횟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으로 1회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취득을 1회로 하며 동일 항목의 연속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재산임대소득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은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지급 시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우발소득은 매회 해당 소득 취득을 1회로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조세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소득 취득 시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금•급여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旣)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에 상기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응당히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임급•급여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후 적시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旣)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신고한 개인정보, 지급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검사에 대비해 납세자가 제공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특별부가공제 등 관련 세무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연도별로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세무기관, 사법기관 등이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과 추가 원천징수를 명한 세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령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세무능력 증진, 세무인력 장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료와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와 달리 특별부가공제를 허위로 공제하거나, 응당히 원천공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원천공제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차용•도용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20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个人所得税扣缴申报管理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61号  　　为贯彻落实新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国家税务总局制定了《个人所得税扣缴申报管理办法(试行)》，现予以发布，自2019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个人所得税税率表及预扣率表  国家税务总局  2018年12月21日  个人所得税扣缴申报管理办法（试行）  　　第一条 为规范个人所得税扣缴申报行为，维护纳税人和扣缴义务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扣缴义务人，是指向个人支付所得的单位或者个人。扣缴义务人应当依法办理全员全额扣缴申报。  　　全员全额扣缴申报，是指扣缴义务人应当在代扣税款的次月十五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其支付所得的所有个人的有关信息、支付所得数额、扣除事项和数额、扣缴税款的具体数额和总额以及其他相关涉税信息资料。  　　第三条 扣缴义务人每月或者每次预扣、代扣的税款，应当在次月十五日内缴入国库，并向税务机关报送《个人所得税扣缴申报表》。  　　第四条 实行个人所得税全员全额扣缴申报的应税所得包括：  　　（一）工资、薪金所得；  　　（二）劳务报酬所得；  　　（三）稿酬所得；  　　（四）特许权使用费所得：  　　（五）利息、股息、红利所得；  　　（六）财产租赁所得；  　　（七）财产转让所得；  　　（八）偶然所得。  　　第五条 扣缴义务人首次向纳税人支付所得时，应当按照纳税人提供的纳税人识别号等基础信息，填写《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A表）》，并于次月扣缴申报时向税务机关报送。  　　扣缴义务人对纳税人向其报告的相关基础信息变化情况，应当于次月扣缴申报时向税务机关报送。  　　第六条 扣缴义务人向居民个人支付工资、薪金所得时，应当按照累计预扣法计算预扣税款，并按月办理扣缴申报。  　　累计预扣法，是指扣缴义务人在一个纳税年度内预扣预缴税款时，以纳税人在本单位截至当前月份工资、薪金所得累计收入减除累计免税收入、累计减除费用、累计专项扣除、累计专项附加扣除和累计依法确定的其他扣除后的余额为累计预扣预缴应纳税所得额，适用个人所得税预扣率表一（见附件），计算累计应预扣预缴税额，再减除累计减免税额和累计已预扣预缴税额，其余额为本期应预扣预缴税额。余额为负值时，暂不退税。纳税年度终了后余额仍为负值时，由纳税人通过办理综合所得年度汇算清缴，税款多退少补。  　　具体计算公式如下：  　　本期应预扣预缴税额=（累计预扣预缴应纳税所得额×预扣率-速算扣除数)-累计减免税额-累计已预扣预缴税额  　　累计预扣预缴应纳税所得额=累计收入-累计免税收入-累计减除费用-累计专项扣除-累计专项附加扣除-累计依法确定的其他扣除  　　其中：累计减除费用，按照5000元/月乘以纳税人当年截至本月在本单位的任职受雇月份数计算。  　　第七条 居民个人向扣缴义务人提供有关信息并依法要求办理专项附加扣除的，扣缴义务人应当按照规定在工资、薪金所得按月预扣预缴税款时予以扣除，不得拒绝。  　　第八条 扣缴义务人向居民个人支付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时，应当按照以下方法按次或者按月预扣预缴税款：  　　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收入减除费用后的余额为收入额；其中，稿酬所得的收入额减按百分之七十计算。  　　减除费用：预扣预缴税款时，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每次收入不超过四千元的，减除费用按八百元计算；每次收入四千元以上的，减除费用按收入的百分之二十计算。  　　应纳税所得额：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每次收入额为预扣预缴应纳税所得额，计算应预扣预缴税额。劳务报酬所得适用个人所得税预扣率表二（见附件），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适用百分之二十的比例预扣率。  　　居民个人办理年度综合所得汇算清缴时，应当依法计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的收入额，并入年度综合所得计算应纳税款，税款多退少补。  　　第九条 扣缴义务人向非居民个人支付工资、薪金所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和特许权使用费所得时，应当按照以下方法按月或者按次代扣代缴税款：  　　非居民个人的工资、薪金所得，以每月收入额减除费用五千元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每次收入额为应纳税所得额，适用个人所得税税率表三（见附件）计算应纳税额。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收入减除百分之二十的费用后的余额为收入额；其中，稿酬所得的收入额减按百分之七十计算。  　　非居民个人在一个纳税年度内税款扣缴方法保持不变，达到居民个人条件时，应当告知扣缴义务人基础信息变化情况，年度终了后按照居民个人有关规定办理汇算清缴。  　　第十条 扣缴义务人支付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或者偶然所得时，应当依法按次或者按月代扣代缴税款。  　　第十一条 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属于一次性收入的，以取得该项收入为一次；属于同一项目连续性收入的，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财产租赁所得，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利息、股息、红利所得，以支付利息、股息、红利时取得的收入为一次。  　　偶然所得，以每次取得该项收入为一次。  　　第十二条 纳税人需要享受税收协定待遇的，应当在取得应税所得时主动向扣缴义务人提出，并提交相关信息、资料，扣缴义务人代扣代缴税款时按照享受税收协定待遇有关办法办理。  　　第十三条 支付工资、薪金所得的扣缴义务人应当于年度终了后两个月内，向纳税人提供其个人所得和已扣缴税款等信息。纳税人年度中间需要提供上述信息的，扣缴义务人应当提供。  　　纳税人取得除工资、薪金所得以外的其他所得，扣缴义务人应当在扣缴税款后，及时向纳税人提供其个人所得和已扣缴税款等信息。  　　第十四条 扣缴义务人应当按照纳税人提供的信息计算税款、办理扣缴申报，不得擅自更改纳税人提供的信息。  　　扣缴义务人发现纳税人提供的信息与实际情况不符的，可以要求纳税人修改。纳税人拒绝修改的，扣缴义务人应当报告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处理。  　　纳税人发现扣缴义务人提供或者扣缴申报的个人信息、支付所得、扣缴税款等信息与实际情况不符的，有权要求扣缴义务人修改。扣缴义务人拒绝修改的，纳税人应当报告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处理。  　　第十五条 扣缴义务人对纳税人提供的《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应当按照规定妥善保存备查。  　　第十六条 扣缴义务人应当依法对纳税人报送的专项附加扣除等相关涉税信息和资料保密。  　　第十七条 对扣缴义务人按照规定扣缴的税款，按年付给百分之二的手续费。不包括税务机关、司法机关等查补或者责令补扣的税款。  　　扣缴义务人领取的扣缴手续费可用于提升办税能力、奖励办税人员。  　　第十八条 扣缴义务人依法履行代扣代缴义务，纳税人不得拒绝。纳税人拒绝的，扣缴义务人应当及时报告税务机关。  　　第十九条 扣缴义务人有未按照规定向税务机关报送资料和信息、未按照纳税人提供信息虚报虚扣专项附加扣除、应扣未扣税款、不缴或少缴已扣税款、借用或冒用他人身份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相关法律、行政法规处理。  　　第二十条 本办法相关表证单书式样，由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发布。  第二十一条 本办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个人所得税全员全额扣缴申报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5〕205号）同时废止。 |